

개정 전	개정 후
	<p><u>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</u></p> <p>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</p> <p>3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</p>